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3. 23 선고 2021가단184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23.

주 문

1.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표시 제1 내지 6항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한 2019. 6. 2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금 3,878,90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금 3,878,9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표시 제7 내지 9항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한 2019. 6. 2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 민규남

별지